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후견 연계 재산관리지원 제도 도입 등 》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67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I. 개요

1. 조은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06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조은회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2. 26.
- (3) 회 부 일 : 2026. 2.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매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서비스 신청이나 의료행위 동의 등 일상적인 의사결정 대리에 치중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인지기능 저하를 틈탄 주변인의 경제적 학대나 불공정 계약 등 사법적 위험으로부터 환자의 재산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부재하며,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치매환자의 디지털 소외 문제와 돌봄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또한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후견과 연계된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부기등기, 임시 지급정지, 법률구조 등 입체적인 자산 보호망을 구축하고, 치매환자의 디지털 조력권 명문화 및 가족을 위한 간병 휴식제·가족 간병 수당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인간

다운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치매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 12조의5부터 제12조의10까지 신설 등).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치매환자의 재산 보호 및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후견과 연계한 재산관리지원 제도와 이에 따른 재산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디지털 조력권을 보장하는 한편, 간병휴식제 및 가족간병수당 등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에서 10 신설 등).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2조의5(공공후견 연계 재산관리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치매환자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호를 위하여 공공후견 연계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는 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u> <u>1. 치매환자등 또는 그 후견인과의 계약을 통한 소유 재산의 수탁 및 관리</u>

<신 설>

2. 수탁 재산의 운용 및 이를
활용한 생활비, 의료비, 간병
비 등의 지급 관리 및 지출
지원

3. 경제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의 재산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조력

②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
용절차, 대상 재산의 범위, 지
출 지원의 방법,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원행정
처장과 협의하여 성년후견 등
심판 절차와 재산관리 지원서
비스를 연계하는 절차를 마련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매
안심센터를 통하여 후견 및 신
탁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가
정법원 심판 청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6(부동산등기에 관한 특
례) ① 제12조의5에 따라 부동
산을 수탁한 기관은 해당 부동
산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신 설>

<신 설>

대상임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7(임시 지급정지 및 확

인) ① 수탁기관은 수탁 재산 중 현금자산에 대하여 피해 의심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지급을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24시간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8(법률구조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인지기능 저하 상태에서 맺은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위한 민사소

<신 설>

<신 설>

송 등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9(디지털 조력권 보장

등) ① 국가는 치매환자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하여 디지털 조력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하여 치매 친화적 사용자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10(치매환자 가족의 돌

봄 휴직 및 간병 휴식지원) ① 국가는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돌봄 휴직 및 간병 휴식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단기 보호 서비스를 포함한 간병 휴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가족 간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가족 간병 수당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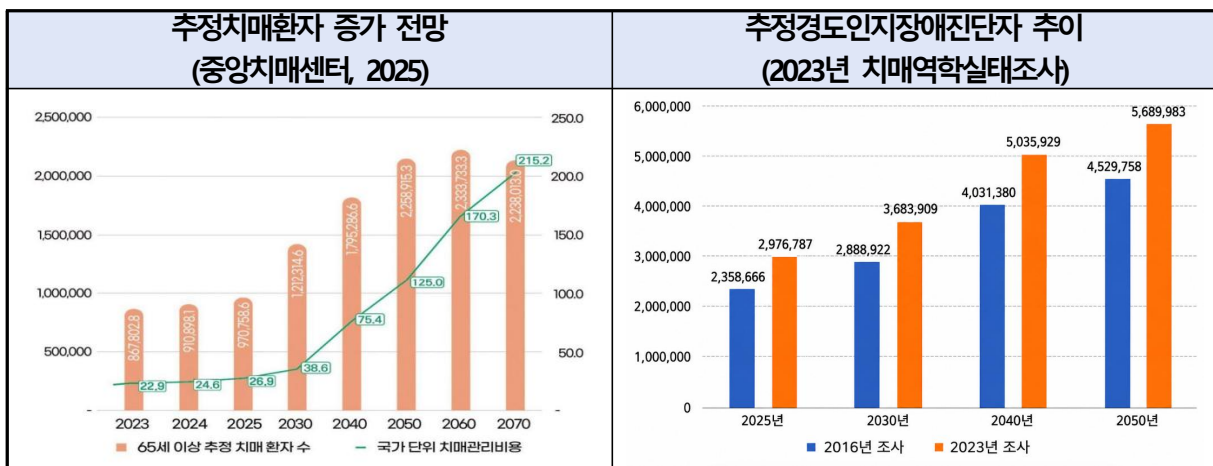
④ 제3항에 따른 가족 간병 수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u>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종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u>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 5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은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	---

2. 주요 검토 사항

-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치매환자 및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진단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추정치매환자 수는 2025년 97만 명에서 2050년에는 226만 명으로 약 2.3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추정경도인지장애진단자 수 또한 2025년 298만 명에서 2050년에는 569만 명으로 약 1.9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추정치매환자 및 추정경도인지장애진단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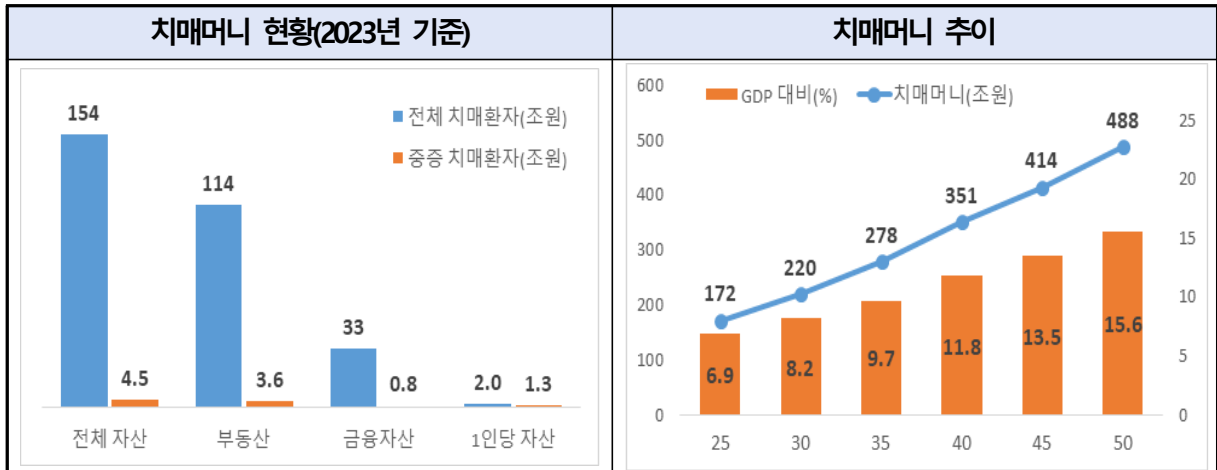


*자료: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보건복지부

치매환자 수의 증가와 함께 이들이 보유한 자산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저출산고령사회가 발표한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2025. 5.)를 보면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환자가 보유한 소득 및 재산, 이른바 ‘치매머니’는 2023년 기준 GDP의 6.4% 수준인 154조원으로 나타남. 해당 금액은 205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하여 예상 GDP의 15.6%에 해당하는 488조원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¹⁾ 이에 따라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인구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치매머니 현황 및 추이 >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5. 5. 6.

현행 「치매관리법」²⁾은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 신청이나 의료 행위 동의 등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치매환자가 보유한 재산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착취나 불공정 계약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공공신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³⁾

1) ‘치매머니 154조원, 2050년엔 488조원 넘는다 - 정부 첫 전수조사, “투명한 관리, 보호대책 시급”’, 2025. 5. 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3) “치매머니 2050년 GDP 15% 넘어…공공신탁 도입 검토해야”, 연합뉴스 2026. 2. 18.

< 치매공공후견제도 >

• (개념)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제도

• (유형) 성년후견(능력 결여), 한정후견(능력 부족), 특정후견(일시 후원 필요)

*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경우 특정후견(3년)을 원칙으로 함**

구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개시 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필요
행위 능력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제한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 권한	포괄적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 대리권
비고	피후견인의 사망 또는 종료 심판까지 지속	피후견인의 사망 또는 종료 심판까지 지속	피후견인의 사망 또는 특정후견기간(3년) 만료시까지 지속

• (후견인의 임무) 재산관리 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의 대행 등

* 법원 결정 및 후견유형에 따라 임무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자료: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자기 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할 수 있게끔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성립되는 제도를 말하는데, 국가기관 또는 법률 등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기관 등이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공신탁’으로 정의될 수 있음.⁴⁾

< 후견제도와 신탁제도의 비교 >

구분	후견제도	신탁제도
법적 근거	「민법」 ⁵⁾	「신탁법」 ⁶⁾
목적	피후견인 생활 권익보호, 소극적 재산관리	재산관리·운용, 유연, 공익목적 등
적용대상	신체적·정신적 보호가 필요한 개인	재산 및 자산
관리주체	후견인	수탁자
운영방식	성년후견제도(법원의 감독)	보통 계약으로 운영
유연성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름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

4) 고령자에 대한 공공신탁 사업 모델 검토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3)

5)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6)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탁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

현재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신탁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최소 가입금액이나 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인해 소액의 재산을 보유한 저소득·취약계층이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이미 해외에서는 인지취약자 등의 재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의 정부가 설립한 특별수요신탁회사(SNTC)를 공공수탁청과 연계하여 위탁자의 자산을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⁷⁾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신탁’의 개념을 활용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2026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치매환자 등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신탁계약을 통해 관리한다는 점에서 ‘공공신탁’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7)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후견과 신탁의 상호보완 전략, 국회입법조사처 | NARS입법·정책 | 제180호 2026. 4. 28.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

- ◇ 사업 내용 :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에 근거한 의료비, 필요물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
 - * 치매진단 이후에는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이 공공기관과 신탁계약 체결
- ◇ 대상자 :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수급권자
- ◇ 지원범위 : 시범사업에서는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으로 한정하고, 단계적 확대
 - 신탁수수료는 무료가 원칙이나 고액자산가의 경우 실비 수준의 수수료 부과 검토
 - * 민간신탁시장(통상 10억) 고려, 신탁재산 상한액을 10억으로 제한

* 자료: 보건복지부

공공신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가 규정된 바 있음. 다만, 동 법률은 후견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산관리지원서비스와 후견제도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에서 개정안과 차이가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본조신설 2025. 4. 1.)」
제29조의4(재산관리 지원) ①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이하 “발달장애인등”이라 한다)와 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발달장애인등의 소유 재산을 이전받아 그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계약기재사항, 재산 관리·운용의 범위와 방법, 비용부담, 계약해지 절차 및 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공공후견 연계 재산관리지원 제도’는 공공후견 개시가 서비스의 이용요건인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치매환자나 경도인지장애자 등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공후견과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관계 및 각각의 이용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함께 규정된 부기등기 및 임시 지급정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이라는 하나 부동산에 대한 공시 및 현금자산의 지급 제한이라는 독립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임시 지급정지는 이용자의 재산권 행사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지급정지 대상 및 해제요건 등 국민의 권리 제한과 직접 관련되는 본질적 사항을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유사한 내용의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을 규정한 전진숙의원안(의안번호 제2209429호)에 대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시범사업의 시행 및 운영 결과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음(2025. 8. 20.).

보건복지부는 현재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사업 운영실적 및 효과 등을 토대로 제도화 여부와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시범사업 수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개정안과 같이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공공후견과 연계할 경우 현행 시범사업의 지원대상 중 일부만 서비스 대상이 되어 이용자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개정안은 치매환자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조력권을 보장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친화적 사용자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돌봄휴직 및 간병휴식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휴식제와 가족간병수당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는 치매환자의 증가와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의 확대, 디지털 전환 확대 및 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 등에 대응하여 기존 치매정책의 범위를 의료·돌봄 중심에서 재산보호, 디지털 접근성 및 가족지원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다만, 디지털 조력권의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이용 편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디지털포용법」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일반적인 디지털취약계층과 구별되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돌봄휴직, 간병휴식제 및 가족간병수당의 경우에도 현행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있으며, 해당 내용은 새로운 권리 또는 급여를 신설하거나 재산권 및 금융거래 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가족돌봄휴직제⁸⁾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의 질

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말함.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같은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하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신청 근로자 외에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주가 가족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족돌봄휴직은 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함.

가족돌봄휴가제⁹⁾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말함.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고, 연장되는 경우에는 20일까지임.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족돌봄휴가는 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함.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¹⁰⁾는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에 대한 휴식 지원을 하는 제도로써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여기에는 단기보호급여와 종일방문급여가 있음. 단기보호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치매 환자를 연 12일까지 돌봐주는 서비스로서 그 시간동안 가족은 돌봄부담을 덜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음. 종일방문급여는 1회당 12시간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것임. 일반 방문요양은 1회 3~4시간 정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종일방문급여는 12시간 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치매환자 가족이 하루를 온전히 휴식할 수 있을 특성이 있음.

위와 같이 가족돌봄휴직과 휴가, 장기요양 가족 휴가 등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휴직과 간병휴직제 및 가족 간병 수당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의2(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및 제36조의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보건복지부는 「디지털포용법」에서 치매환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및 포용 증진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존 법률과 중복되며, 가족돌봄휴직,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및 가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등의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추가적인 재정소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기관·지자체 등 의견 >

보건 복지부	○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나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 낮은 개정 실익 등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 필요 - (재산관리) 복지부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시행(26.4)하고 있으므로, 입법사항은 시범사업 추이를 바탕으로 검토되어야 함 - (디지털 조력권) 최근 「디지털포용법」이 제정('25.1 제정, '26.1 시행)되어 치매환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및 포용 증진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존 법률과 중복 <관련 조문> 디지털포용법 제2조(정의)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④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족지원) 치매환자 보호자 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 장기요양가족휴가제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률」에 근거, 가족돌봄휴직 제도(고용부)가 이미 있어, 개정 실익 없음 - (간병 수당) 환자 가족이 요양보호사라면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추가 수당 도입은 재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기획 예산처	○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26.4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예정으로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안은 향후 시범사업 추이 및 성과를 토대로 마련 필요 ○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의무를 담은 「디지털포용법」이 시행중으로, 해당 법에 근거해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 규정할 실익이 낮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치매환자에 대해 시설·재가급여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이므로 법 개정 실익이 낮음 ○ 또한, 현재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운영 중이고, 일부 지자체 및 민간보험을 통해 간병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간병수당 등 별도 제도 신설 필요성은 제한적
중앙 치매센터	○ 본 개정안의 재산관리제도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이 선행될 필요 ○ 디지털 조력권 보장의 경우 「디지털 포용법」과의 법 체계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며, 해외에서 치매환자를 특정하여 별도의 디지털 권리 보장 규정을 두는 법률 사례는 확인된 바 없음

	○ 마찬가지로, 가족 돌봄휴직 및 간병 휴식지원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가족돌봄 휴직 및 돌봄휴가 제도와의 역할 중복 및 정합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검토 필요
국민연금 공단	○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6.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법률 안은 현 제도 도입 취지와 상충*되는 면이 있으므로 추진 경과를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 * 공공후견 연계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지원대상자 중 일부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용자 축소 등 우려가 있음
부산 광역시	○ 현재 진행 중인 재산관리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와 성과 분석이 법제화 근거가 되어야 하며, 유관 부처(금융위, 법원행정처 등)의 상위법령(민법, 부동산 등기법 등)과의 충돌 등이 검토되어야 함 ○ 또한, 사군구에서 치매안심센터가 후견 및 신탁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의 행정 인력과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함

문 의 처

02)6788-5499

【참고】	디지털 포용법 관련 조항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이하 “무인정보단말기”라 한다)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 ② 지능정보사업자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설계·제작하거나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임대하는 자는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임대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시정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임대하는 자에 대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제조·임대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설치·운영자의 단계적 범위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방법,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조치의 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방법·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및 그 밖에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